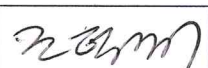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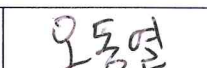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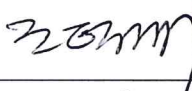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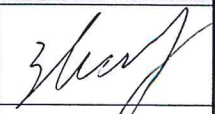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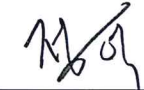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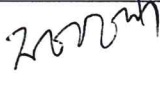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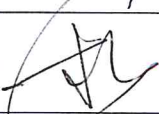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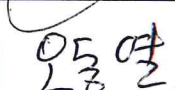


동서대학교 평의위원회 회의록

동서대학교 평의위원회 회의						
회의소집일시	2017년 1월 6일(금) 10:00					
회의일시	2017년 1월 17일(화) 15:00					
재적의원	11명	참석의원	10명			
회의장소	뉴밀레니엄관 13층 회의실					
회의안건	1. 2016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예산(안) 1-1.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금액 승인 1-2. 2016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예산(안) 승인 2. 2017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(안) 2-1.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금액 승인 2-2. 임의건축기금 사용 계획(안) 승인 2-3. 2017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(안) 승인					
회의내용						
<p>1. 회의진행</p> <p>가. 조덕제 의장이 평의원의 동의를 얻은 후 성원이 됨으로 개회를 선언하다.</p> <p>나. 조덕제 의장은 금일 회의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본 안건 심의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다.</p> <p>2. 본안건 심의</p> <p>제1안건 : 2016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건</p> <p>가. 조덕제 의장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중 일부를 학교에서 부담하는 안건이라고 하며 서재희 기획연구부처장에게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.</p> <p>나. 서재희 기획연구부처장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교비회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인에서 부담예정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학교에서 부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그 내용으로 교원 법정부담금 중 사학연금부담금 1,231,418천원, 직원법정부담금 중 사학연금부담금 619,408천원, 합계 1,850,826천원 중 법인 부담예정인 370,000천원을 제외한 1,480,826천원을 학교에서 부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.</p> <p>다. 김희경 의원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법인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며, 작년과 동일하게 부담한다고 하니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하니 정인태 의원이 재청하고 참석인원 전원이 동의하다.</p> <p>라. 조덕제 의장은 의원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,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</p> <p>제2안건 : 2016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(안) 승인건</p> <p>가. 조덕제 의장은 편성된 2016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참석한 위원들에게 배부하고, 서재희 기획연구부처장으로 하여금 2016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내용을 설명하게 하다.</p> <p>나. 서재희 기획연구부처장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수입부에서 등록금 수입이 학생 감소로 10.6억원</p>						
간서명 대표	위원장		위원		위원	

2017. 1. 17

구분	성명	서명(인)	구분	성명	서명(인)
의 장	조덕제		의 원	공승무	
부의장	정종덕		의 원	방의섭	
의 원	정인태		의 원	김정수	
의 원	이홍득	“불참”	의 원	박이봉	
의 원	김희경		의 원	오동열	
의 원	강도형	